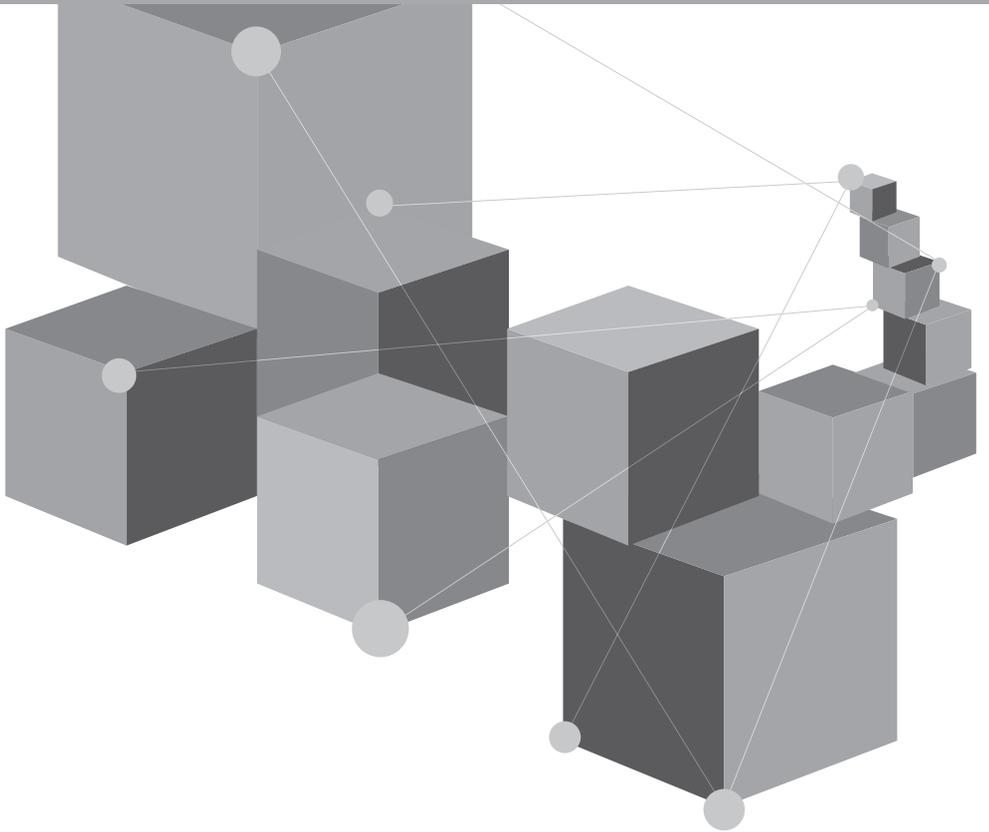


재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재심 2012-1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문〉

中都日報 2012년 5월 9일자 8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대상 부부소득 8천만원까지 확대 필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54차 회의(5월 30일)에서 내린 원 결정을 '취소' 한다.

〈이유〉

1. 中都日報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中都日報 5월 9일자 8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대상 부부소득 8천만원까지 확대 필요」 제목의 기사는 보도 전일 오전 8시 42분 대한상공회의소가 본지 대한상의 출입 박전규 기자의 e-메일로 직접 송부한 보도자료에 의거해 기사화한 것으로, 연합뉴스 8일 오전 11시 송고된 「생애 첫 주택 지원, 부부소득 8천만으로 상향」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본지와 거의 동시간대에 연합뉴스 대한상의 출입기자에게도 본지에 발송한 문건과 동일한 보도자료를 전달하고 보도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터넷, 통신 등은 5월 8일 11시, 신문은 5월 9일자 조간부터 보도해달라는 엠바고를 달아 각 언론사에 상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돌렸고,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5월 8일 11시, 본지는 5월 9일자 조간에 각각 보도했습니다.

본지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와 실체적 내용 및 표현이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일치한 것은 무단 전재 또는 표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보도자료 문건에 의거해 기사를 작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지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와 보도 시점의 선후 관계일 뿐, 귀 위원회가 결정문에서 적시한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中都日報 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연합뉴스 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인터넷, 통신 등은 5월 8일 11시, 신문은 5월 9일자 조간부터 보도해달라는 엠바고를 달아 해당 보도자료를 돌렸고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5월 8일 11시 송고, 中都日報는 5월 9일자 조간에 보도했으며 △ 中都日報 기사와 연합뉴스 기사는 동일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나 엠바고에 따라 시차를 두고 보도되었다는 中都日報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2) 따라서 中都日報의 해당 기사는 中都日報가 재심 청구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연합뉴스’ 기사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된다.

3) 심의실은 신문기사의 표절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사 내용의 출처를 확인할 때 주로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의 기사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드물게 통신 기사와 특정 신문의 기사가 같은 취재원에게서 제공받은 기사 형태의 보도자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의 보도 시점이 일반 신문의 보도 시점보다 빨라 해당 신문 기사가 표절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4) 이 같은 검토 결과 中都日報의 재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 20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문〉

스포츠서울 극화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 2012년 9월 8일자 17면(184회), 9월 10일자 17면(185회)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57차 회의(9월 26일)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한신윤위)는 한신윤위 제6982호를 통해 “스포츠서울 극화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글 광끼/그림 이세경) 2012년 9월 8일자 17면(184회), 9월 10일자 17면(185회)에 대해 ‘경고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 적시 극화중 184회는 “병원에 입원중인 남성환자를 한 교회 여성 성가대원들이 방문해 포교하는 과정을 그렸다. 교회 여신자들이 남성환자와 대화중에 남성환자의 성기가 발기하는 바람에 남성이 덮고 있던 시트가 불쑥 솟구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데 뜻밖에 여신자 한 사람이 다가가 이를 어루만지는 장면을 그렸다”, 또 185회는 “한 실내에서 칼을 든 침입자가 ‘혁이 오빠’라는 남성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르고 피가 솟구치는 장면을 그렸다”며, 이 두 장면이 선정적이고 탈선적이며 잔인한 장면을 거리낌 없이 게재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개념과 사회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경고’ 결정을 했습니다.

■ 스포츠서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 9월 8일자의 경우 극중 인물이 누워있는 침대 시트를 들추자 발기가 돼있는 장면은 극의 전개상 코믹한 설정이었는데 ‘선정적이고 탈선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매체 만화의 노출이나 선정적 장면과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 매체의 경우 전라의 모습이나 섹스 신등이 거침없이 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장면이 선정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9월 10일자는 극중 인물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 장면을 보면 꿈속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바로 다음 컷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공의 꿈속에 나온 장면이기 때문에 잔혹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판단됩니다.

■ 스포츠 서울은 선정적이고 탈선적인 묘사 등이 신문에 실리지 않도록 작가진과 꾸준한 대화를 하고 있으며, 건강한 스포츠 전문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스포츠서울은 위 청구 사유에서 '문제의 극화 184회는 극의 전개상 코믹한 설정이었는데 선정적이고 탈선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타 매체 만화의 노출이나 선정적 장면과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타 매체의 경우 전라의 모습이나 섹스 신 등이 거침없이 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장면이 선정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이하 윤리위)는 스포츠서울의 주장처럼 문제의 극화 184회가 타매체 만화의 노출이나 선정적 장면과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스포츠서울이 막연하게 예시한 타매체가 어떤 매체의 어떤 극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문제가 된 스포츠서울의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 184회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윤리위는 문제의 극화 184회에서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는 바람에 덮고 있던 시트가 불쑥 솟아오른 장면만 지적한 것은 아니다. 포교에 나선 교회 여성가대원이 불쑥 솟아오른 남성 성기를 남들의 시선도 아랑곳없이 공개적으로 쓰다듬는 장면이 이르기까지 스토리의 전개 역시 선정적이고 탈선적이라고 본 것이다.

2) 또 스포츠서울은 극화 185회에 대해 '극중 인물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 장면을 보면 꿈속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다음 컷에서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주인공의 꿈속에 나온 장면이기 때문에 잔혹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잔인한 장면이 현실이냐 꿈이냐는 상황의 문제는 잔인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윤리위는 극화의 장면과 스토리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난 표현의 수준을 판단한 것이다.

3) 스포츠서울이 제시한 재심 청구 사유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서울이 게재한 '꽃미남 라이브 홍신소'의 해당 극화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신문윤리위원회의 9월 결정문 취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